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330호 2021. 11. 8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규 칙

-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(예천군 규칙 제1298호)

공 고

- 「예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」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1-1269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1년 11월 8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규칙 제1298호

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당해 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. 다만, 신설 리의 경우 거주기간은 예외로 한다.

4. 임명일 현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임명) ① 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·면장이 임명한다.

1. 리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
2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 및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2

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(임차인)대표회의를 통해 추천을 받은 사람(리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만 구역된 경우에만 적용한다)

3. 제5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을 받은 사람

② 읍·면장은 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를 그 임기만료 20일 전에 리주민총회 또는 입주자(임차인)대표회의의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.

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해임) 읍·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읍·면장은 그 취지를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1. 신체·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
2.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3.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
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
5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

제5조(공개모집) ① 공개모집에 의한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 공고문을 읍·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한 후, 필요한 경우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읍·면장이 임명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장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 후보자 지원서,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 추천서를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심사위원회에서는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심의하여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읍·면장에게 추천한다.

④ 후보자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다.

제6조(이장 심사위원회) ① 읍·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장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1.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자가 복수인 경우
2.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장을 공개모집 한 경우
3. 그 밖에 읍·면장이 이장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지역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위원장은 읍·면장으로 할 것
2. 위원은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·면장이 위촉할 것. 이 경우 심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3.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하고,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할 것

제7조(임기)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 각 호의 추천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임명장 교부) 읍·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장 임명장을 교부한다. 다만, 연임되는 이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9조(이장 신분증의 발급 등) ① 읍·면장은 이장 임명 시 별지 제5호서식

에 의거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읍·면장은 이장의 사직 또는 해임 시 이장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이장으로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이 규칙 시행 전에 임기를 정하지 않고 이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마을자체 규약 등에 따라 정해진 임기 동안 이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의 만료일까지 임명된 것으로 본다

이장 후보자 심사기준표(제5조 관련)

□ 심사대상자(읍·면 리)

성 명		성 별		생년월일		연락처	(자택)
주 소							(휴대폰)

☐ 심사기준 (기준일 : 공고일 현재)

심 사 항 목 (비 율)		배점기준	배점	득점	비 고 (인정조건 등)	
1.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(25%) (이장·반장 경력 제 외)	250시간 이상	25			·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 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※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	
	150시간 이상~ 250시간 미만	23				
	100시간 이상~ 150시간 미만	21				
	100시간 미만	19				
	봉사활동 경력 무	17				
2. 이장 활동 집중도 (10%)	검직 없음	10				
	자유·자영업	8				
	기타	6				
3.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 (15%)	장관 이상	15			· 본인 증거 자료 제시 (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) ※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	
	광역단체장·차관급	13				
	기초단체장	11				
	포상경력 무	9				
4. 면접 (40%)			40			
5. 이장·반장 활동 경력 1년 이상인 경우(10%)			10			
총 계			100			
	확인자(읍·면장)		직급		성 명	(인)

이장 후보자 면접기준표(제5조 관련)

□ 면접대상자 ()읍·면 ()리

성명		성별		생년월일		연락처	자택)
주소							휴대폰)

□ 면접기준

심사 항목(점수)	배점기준	배점	특점	비고(인정조건 등)
1. 지원 동기 및 지역관심도(10점)	탁월	9~10		· 올바른 역사 인식 · 지원동기 · 군정현황 인지도 등
	우수	6~8		
	보통	3~5		
	미흡	0~2		
2. 이장의 임무에 대한 이해도(10점)	탁월	9~10		· 이장의 임무 숙지 여부 · 주민갈등 시 역할
	우수	6~8		
	보통	3~5		
	미흡	0~2		
3. 사명감 및 적극성(10점)	탁월	9~10		· 사명감, 적극성 · 직무집중도(겸직여부) · 주민친화도 등
	우수	6~8		
	보통	3~5		
	미흡	0~2		
4. 인품, 건강상태 등(10점)	탁월	9~10		· 성품, 건강상태 · 활동력
	우수	6~8		
	보통	3~5		
	미흡	0~2		
총 계		40		

※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, 읍·면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적의 변경할 수 있음.

※ 위 심사 항목에 따라 읍·면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 실시 가능함.

년 월 일

면접위원

(인)

○○읍·면 ○○리 이장 후보자 모집공고(안)

「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1항에 의거 ○○읍·면 ○○리 이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읍·면장

1. 모집대상 : ○○읍·면 ○○리

2. 임명(위촉)기간 :

3. 지원자격

가.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, 국가관이 투철하고,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

나.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

다.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투철하고, 애향심이 강한 자

라. 임명일 현재 「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」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

4. 신청기간 : 20 . . . 09:00 ~ 20 . . . 18:00까지(10일간)

5. 구비서류

가. 이장지원서

나. 주민등록초본

다. 주민추천서 및 회의록

라.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
6. 기타사항 : 지원서 기재착오,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7. 문의 및 접수 : ○읍·면 행정복지센터(☎ 054-000-0000, FAX 054-000-0000)

이장 지원서

성명(한자)	()					사 진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)
생년월일			연 락 처			
주 소						
전 입 일			직 업			
최종학력 및 주요경력	년	월	일	내 용		비 고
자원봉사활동 실적(자원봉사 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)	봉사활동 장소		활동시간		활동내용	비 고
각종 수상내역 (공공기관 상훈에 한함)	기 간		자격 및 주요경력			근 무 처

본인은 「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
읍·면 _____리의 이장 후보자로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:

(서명 또는 인)

_____읍·면장 귀하

※ 첨부 : 1. 주민등록초본, 2.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3. 마을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및 회의록(해당자에 한함)

주민 추천서

○ 이장 추천 대상자

- 성 명 : (한자 :)
- 생년월일 :
- 주 소 :
- 연 락 처 : (휴대전화 :)

상기인을 예천군 00읍·면 00이장으로 추천합니다.

○ 추천인 명단

연번	성 명	생년월일	주 소	날인(서명)	추천일

※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하고, 세대주에 한하여 유효합니다.

※ 허위 또는 조작 시 무효이며,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임 명 장

○○읍·면 ○○리

○ ○ ○

귀하를 ○○읍·면 ○○리 이장으로
임명 함.

년 월 일

○ ○ 읍·면 장

이장 신분증

NO. _____ 신 분 증 사 진 (3cm×4cm) ○○읍·면 ○○리장 성 명 (앞 면)	소속 : ○○읍·면 행정복지센터 성명 : 생년월일 : 20 . . . 예천군 ○○읍·면장 (발급기관 전화번호) 직인 날인 (뒷 면)
---	---

규격 : 5.5cm×9.0cm

글씨체 : 휴먼명조체(검정글씨)

◇개정이유

최근 도청신도시 공동주택 증가 및 도시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리
이장 임명과 해임에 관한 갈등을 방지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기
위하여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

◇주요내용

가. 임명자격 추가(제2조)

- 당해 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-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나. 임명절차를 임명과 해임으로 분리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(제3조 및 제4조)

- 이장 후보자 추천 방법 확대
 - 입주자(임차인) 대표회의 또는 제5조의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
- 해임 사유 추가
 - 성범죄자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임 가능

다. 공개모집, 이장 심사위원회, 임기, 임명장 교부, 이장 신분증의 발급
등 조항 신설(제5조 ~ 제9조)

「예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」

입법예고

「예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8일

예 천 군 수

1. 조례명 : 예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
안

2. 제정이유

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7694호, 2020. 12. 22. 공포)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,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·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, 지역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5조)

- 보행자길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
-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계획 수립
- 지역계획 집행을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

다.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-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예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함

라.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9조)

- 보행자 및 보행약자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
-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
- 개선사업 완료일부터 2년 이내 평가 시행

마. 보행환경개선지구 내 보행자 피해 예방 조치 권고에 관한 사항(안 제

10조)

-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자에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권고 및 비용의 일부 지원

바.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-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

사.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-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건설교통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EMPSHIN3266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건설교통과

3) 팩스 : 054-650-633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(전화: 054-650-625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「예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」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 주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) ①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1. 공원, 체육시설, 시장(市場)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
2. 보행자 전용도로, 보행자전용길 현황

3.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
4.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
5. 보행자길의 소음, 악취, 분진 등의 유발 요소
6. 보행환경 낙후지역
7.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1. 문화,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
2.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
3.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
4.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)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) ① 군수는 법 제8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예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.

②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예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「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」에 따른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.

제7조(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)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천군보에 고시하고, 예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.

제8조(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)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영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1.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안내 표시, 신호주기 개선, 음향 신호기 설치,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

2.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 시설물 등의 재배치,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,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
3.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차도·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
4. 주택가, 골목길, 이면도로,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 사고 감소 방안
5.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

제9조(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)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,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1.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
2. 공동체의 교류증가,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

제10조(조치 권고 등)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 지구에서 소음, 매연, 냄새,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

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재정 확보)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사무의 위탁)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